

## 국제협회 상표에 관한 방침

1. **상표에 관한 일반방침.** 국제협회와 그 소속 회원, 클럽 및 지구(단일, 정 및 복합지구. 이하 “지구”라 칭함)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협회의 명칭 및 문장(및 그 변형)은 세계 각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본 협회 상표의 침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법적 피해를 사전에 경고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

- a. **"상표"의 정의** 라이온스, 라이오네스, 레오, 라이온스클럽, 국제라이온스협회에 국한되지 않고 본 협회의 현존 및 차후의 명칭, 문장, 로고, 씬, 상표에 관련한 것을 의미한다.
- b. **협회의 문장.** 본 협회 및 차타를 받은 각 클럽의 문장은 아래에 제시하는 디자인을 사용한다. 각 클럽은 본 협회의 공식문장만 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한다.



- c. **상표 등록.** 협회의 상표는 국제협회의 법률부에서 등록하고 관리한다. 그 어떤 라이온스 지구(단일, 정 혹은 복합지구), 클럽 혹은 멤버라도 라이온스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
- d. **레오, 라이오네스 혹은 기타 국제협회공식 프로그램:** 레오클럽, 라이오네스클럽, 공식 경연대회, 청소년캠프 혹은 기타 공식 협회 프로그램의 시행방침에 준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클럽용품부 및 공식 면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사용하지 않은 한, 라이온스클럽 및 지구가 협회 상표를 자동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 e. **방침 적용 및 불법사용 시 보고.** 국제협회의 모든 임원, 지명이사, 협회회의장 및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는 협회의 상표 방침을 준수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권장하며 협회 상표의 불법적인 사용을 법률부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매년 서면으로 법률부에 제출한다.
- f. **전반적인 품질 및 내용에 관한 기준.** 국제협회의 상표 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질과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본 상표는 라이온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불쾌감을 주거나 협회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사용한다.

2. **국제협회의 운영업무.** 국제협회 및 그 소속 임원, 이사 및 권한을 가진 직원은 국제협회의 목적과 일반적인 운영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협회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이사회가 때때로 채택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일반적인 운영 업무란 국제대회, 클럽용품, 라이온지, 사업체 스폰서, 제휴 및 기타 모든 협회의 프로그램 및 출판물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모든 신규 상표에 관한 경비는 해당 부 혹은 과 예산에 포함시키고 상표의 갱신등록비는 법률부가 책임진다.
3. **협회가 제공하는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 국제협회는 수시로 특별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가능한 한 모든 회원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해 국제협회 상표를 통하여 얻어지는 로열티 수입은 일반기금에 누적한다. 다음 제품/프로그램은 협회의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협회의 전용 신용 카드를 제외한 보험 상품, 모기지, 건강 제품 혹은 금융 서비스.
4. **회원, 클럽 및 지구에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는 스폰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 지역사회봉사 및 기타 행사 등 협회의 목적 및 클럽과 지구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회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하되, 이러한 사용은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도록 하며 해당 상표를 클럽 용품부나 공식 면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 혹은 서비스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 a. **유인물.**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가 클럽 및 지구운영에 관련된 유인물(편지지, 명함, 봉투 및 안내서 등)에 국제협회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하되 이러한 용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b.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허가.**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는 해당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혹은 기타 디지털 미디어에 협회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협회의 상표 사용은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도록 하며 회원, 클럽 혹은 지구는 내용의 출전이 국제협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 c. **다운 받은 문장(엠블럼).** 라이온스 회원은 국제협회 웹사이트의 공식 포맷으로부터 협회의 문장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 국제협회의 상표를 복사할 수 없다.
5.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에 대한 사용허가.** 본 방침에 규정하는 자동적 허가권 외 아래의 경우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에 대하여 국제협회의 상표 사용권을 허용한다:
  - a.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 사용.**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는 클럽용품부와 공식 면허업체가 제조한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 사용,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이온스클럽 및 지구가 클럽 용품부와 공식 공식면허업체로부터 입수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사용, 구매, 제조, 공급 혹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의류 (조끼는 제외)에 대한 상표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용:** 라이온스 회원 및 지구는 조끼를 제외한 모든 의류품목에 관해서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을 사용, 구입, 판매, 제조 및 배포하도록 자동적으로 허용되며, 품목별로 1년에 30벌로 제한된다. 또한 조끼를 제외한 모든 의류에 국제협회의 상표를 표시한 품목의 사용, 매입, 판매, 제조 및 배포에 대한 허가를 클럽에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1년에 품목별로 총수가 30벌 혹은 클럽회원 수 중, 어느 것이든 많은 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본 장의 목적상 의류는 모자, 셔츠, 넥타이와 같이 신체를 커버, 보호 혹은 장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2)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타의 모든 품목:** 조끼, 품목별 합계가 1년에 30벌을 초과하는 품목 및 본 항에 규정하는 품목 외에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의 사용, 매입, 판매, 제조 및 배포를 희망하는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 지구는 클럽용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클럽 용품부와 법률부가 결정하는 사용료 및 (혹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b. 클럽 혹은 지구사업 스폰서.**

- (1) 라이온스클럽 및 지구는 클럽 및 혹은 지구사업의 스폰서 명칭 및 혹은 문장에 관련하여 국제협회의 상표를 사용할 때 아래의 사항을 따르도록 하며 사용 시에 클럽 및 지구명칭을 명시하고 사용자체가 국제협회의 목적에 상충됨이 없고 국제협회 혹은 국제재단의 활동, 프로그램 혹은 존재와 경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1개 클럽(들) 및/혹은 지구(단일, 정)사업 일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협회의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해당 클럽 및 혹은 지구에 자동적으로 허용한다.
  - i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2개 이상 지구 및/혹은 1개의 복합지구가 관련된 경우 그 사업을 스폰서 하는 해당 복합지구 총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ii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2개 이상 복합지구에 관련된 경우 그 사업을 스폰서 하는 해당 복합지구와 법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2) 허가를 받은 라이온스클럽 및/혹은 지구 스폰서는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고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협회 상표를 서면 커뮤니케이션 혹은 홍보자료에 사용할 수 있다:
- i. 이러한 사업을 스폰서 하는 라이온스 및/혹은 지구명을 협회 상표와 함께 명확히 밝힌다.
  - ii. 협회의 상표 사용은 라이온스클럽 혹은 지구 사업의 규모와 실시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 iii. 라이온스클럽 및/혹은 지구 스폰서 만기 시 협회의 상표 사용 허가도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 c. **라이온스 모바일 앱.** 모바일 앱과 관련하여 협회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온스 클럽과 지구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법률부의 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 d.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 라이온스클럽, 지구, 라이온이 스폰서 하는 재단, 혹은 기타 라이온스가 스폰서 하는 조직(이하 "스폰서"라 칭함)은 아래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이러한 회비 외의 수입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국제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협회가 스폰서 하는 현존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협회의 상표에 대한 사용허가는 동종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2) 회비 외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의 스폰서는 국제협회의 상표 사용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서에는 스폰서 하는 지구임원회 또는 복합지구 총재협의회회의의 지지하는 결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협회가 신청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국제협회의 상표사용권을 허가 받으려면 스폰서가 웹사이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권유자료를 검토하여 국제이사회에 전반적인 질과 내용에 대한 기준에 상응하고 적용되는 상표 방침과 일치하도록 확인하는 것을 동의한다. 권고 전에 웹사이트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전부 법률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4) 스폰서는 신용 카드를 포함한 국제협회의 상표가 인쇄되거나 첨부되는 권유용 자료 및 기타 상품에 신원을 명확히 표시한다.

- (5) 스폰서 및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자는 스폰서가 업자로부터 취하는 총매상 혹은 순수입 중 적은 액수의 10%를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지불하도록 동의한다 재정부는 사용허가를 받은 각 스폰서에 최소한 연 1회 연락을 취하여 국제협회에 대한 로열티 지불액을 결정한다. 각 스폰서는 로열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자가 보유하는 모든 관련기록 및 서류를 점검하는 권리를 가진다.
  - (6) 국제이사회는 스폰서 및(알려진 경우) 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취소에 대한 스폰서 및 업자간의 계약상의 권리를 검토할 기회를 고려하고 사용권이 취소될 경우 해당 업자는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을 즉각 중지하도록 한다.
  - (7) 스폰서 및 회비 외 수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자는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우송용 회원 명부를 권유의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이외의 목적에 사용 및 배포하는 경우 국제협회는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위반업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는 즉시 발효되며 허가 없이 우송용 회원명부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 및 무단 복사하는 스폰서 및/혹은 회비 외 프로그램에 관계하는 업자는 \$500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e. **지구의 국제대회 관련 여행업자 추천** 지구는 국제대회에 관련하여 여행 및/혹은 관광을 주선하기 위해 여행 대리점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여행업자 추천서를 대회부로 제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여행업자가 여행 책자 혹은 기타 유사한 유인물에 국제협회의 상표를 사용하길 희망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법률부로 제출해야 한다:
- (1) 아래 사항을 법률부로 제출해야 한다. “국제협회 및 라이온스 지구(단일, 정 및 복합)는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란 면책사항이 포함된 책자 혹은 유사한 유인물의 견본을 제출.
  - (2)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에 대한 로열티 \$25.00를 지불.
6. **재단** 국제이사회나 동 이사회가 지명하는 자 혹은 법률부 부장은 라이온스클럽이나 지구 이외의 법인 조직(이하 “재단”이라 칭함)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국제협회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사용허가 전에 재단은 제안된 활동이 다음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당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a. **재단의 명칭.** 신청하는 재단의 명칭에는:
- (1) 라이온스를 포함.

- (2) 지역사회, 시, 도, 주, 지리적 영역 혹은 소재지를 포함.
  - (3) 국제협회 혹은 국제재단과 대립 혹은 혼동을 초래해서는 안됨.
  - (4) "협회"(Association)란 단어를 포함시킬 수 없음.
- b. **규제 문서에 대한 조건.** 대상이 되는 재단의 정관, 부칙 및/혹은 기타의 규제 문서(이하 "규제 문서"라 칭함)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1) 최소한 그 이사회의 과반수가 곧 스탠딩 라이온스클럽의 곧 스탠딩 회원이어야 하며
  - (2) 규제 문서의 개정은 지구대회 혹은 연차 회의에 참석한 재단의 일반 구성원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 (3) 재단의 구성원은 라이온스클럽 혹은 곧 스탠딩 회원으로 구성되며;
  - (4)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며;
  - (5) 재단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
- c. **목적.** 신청하는 재단의 목적은 국제협회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있고 신청하는 재단은 국제협회 혹은 국제재단의 활동, 프로그램, 기존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기타의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 d. **재단 설립의 승인.** 신청하는 재단은 단일클럽이나 3개 혹은 그 이하 클럽이 각 스폰서클럽이 승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하는 재단이 1개 혹은 그 이상 지구(단일, 정 혹은 복합), 4개 혹은 그 이상 클럽 혹은 그 이름이 지구 수준의 개입을 의미할 때 지구(단일, 정 혹은 복합)가 승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e. **연 1회 서류를 제출하는 요건.** 재단은 매년 현 임원 명단과 함께 규제 문서를 법률부로 제출해야 한다.
- f. **국제협회의 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재단은 명칭 및 각종 문서, 선전자료 및 활동을 포함한 재단의 업무상 라이온스 명칭과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협회의 상표사용은 국제이사회가

가끔 채택하는 이사회의 방침에 준해야 하며 국제협회의 상표는 클럽용품부나 공식 판매 면허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g. **취소 가능한 사용권.** 본 항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단은 상표사용에 관한 취소 가능한 사용권을 발부 받을 수 있으며 재단이 본 항의 규정과 매년 신고 요건 및 지속적 지원을 유지하는 조건에 한정한다. 이러한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7. **공식 판매면허업자.** 클럽용품부는 라이온스회원, 클럽 및 지구에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제조업자나 기타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판매계약 기간은 클럽용품부가 결정할 것이며 면허비 및/혹은 모든 판매품목에 대한 로열티도 포함시킨다.

8. **대회 교환핀.** 국제협회의 상표는 아래와 같이 교환 핀에 사용할 수 있다:

- a. 대회 교환핀의 정의 대회 교환 핀은 국제협회의 등록 상표가 새겨진 아래와 같은 핀이다:

- (1) 공식 면허업자로부터의 주문.
- (2) 핀의 출전이 국제협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클럽, 지구(단일, 준 혹은 복합) 또는 회원명을 명확히 밝힘.
- (3) 라이온스 대회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교환 또는 증정할 목적으로만 사용.
- (4)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국제협회의 상표에 관한 방침에 일치.
- (5) 상표법에 정해진 ® 마크가 표시.
- (6) 핀의 뒷면에 면허업체의 마크를 포함.
- (7) 클러치, 안전핀 또는 나사로 질 수 있는 장치가 뒷면에 장착.
- (8) 라이온스 조직의 임원을 지정하거나 이와 관련이 없음.
- (9) 특별한 공적 및 연수에 대한 표창 및 수상이나 라이온스 조직 혹은 제휴조직을 지지할 목적으로 제조하지 않음.
- (10) 라이온스 회의 혹은 특별 행사에 출석 혹은 참가를 나타내기 위해 제조하지 않음.

(11) 공식 클럽용품 카탈로그, 특별 판매 혹은 국제협회 클럽용품부가 때때로 발행하는 브로셔나 전단지에 포함된 상품과 동일한 보석이나 상품이 아님.

i. 공식 회원 라펠 핀은 대회 교환 핀으로 간주되지 않음.

ii. 라이온스 대회 교환 핀은 클럽용품부 및 혹은 교환 핀은 공식 면허업자만이 제조, 판매 및 배포할 권한을 가짐.

9. **대회 호스트위원회** 국제대회 호스트위원회는 국제대회 개최 전과 기간 중에 용품의 판매를 포함한 국제대회의 홍보자료에 국제협회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호스트위원회가 대회부와 법률부의 승인을 받아 양방이 정하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10. **상표에 관한 방침의 이행** 국제협회는 협회의 상표 소유자로서 본 협회 상표의 침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법적 피해를 사전에 경고하고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

a. **라이온스 회원, 클럽 및/혹은 지구의 불법사용.** 국제협회가 라이온스 회원, 클럽 혹은 지구에 국제협회의 상표가 표시된 품목을 불법사용, 판매, 구입, 제조 및 /혹은 배포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입수할 경우, 개인 혹은 조직에 대하여 상표의 불법사용을 즉각 중지하도록 통고하며 본 방침에 따라 국제협회가 수령하는 로열티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국제이사회 혹은 법률부가 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b. **라이온스 회원, 지구 및 /혹은 지구의 지속적인 위반.** 라이온스 회원, 클럽 혹은 지구가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후에도 국제협회의 상표방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충분한 근거가 협회로 접수될 경우, 국제협회가 아래의 어느 한 가지 혹은 모든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1) 국제이사회는 라이온스클럽에 위반하는 회원을 제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에 클럽이 국제이사회의 지시에 불복할 경우 국제이사회가 클럽을 스탠더스 쿼에 처하거나 차타를 취소시킬 수 있다.

(2) 국제이사회가 필요한 경우 기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국제협회의 상표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